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34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이주희 · 박정현 · 한준호

김한규 · 문진석 · 김우영

김 윤 · 노종면 · 허성무

최기상 · 임미애 · 임문영

손 솔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하는 통신시장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고,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감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금지행위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시정방안을 적은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나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등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의의결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3조의3 신설).
-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거짓 신청이나 불이행 등의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중단된 심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신설).
- 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동의의결) ① 제50조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부터 제53조의4까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3조의4까지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된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나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종전에 동의의결의 대상이 된 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한 경우
2.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3. 해당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공정한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이용자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이용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이용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53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5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그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2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신청인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같은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⑦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제출 방법, 이행 계획의 점검 방법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가 현저히 변경되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

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53조의5(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회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50조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3조의2(동의의결) ① 제50조제1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부터 제53조의4까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3조의4까지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된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조사나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u> <u>1. 신청인이 종전에 동의의결의 대상이 된 행위와 같은 행위</u>

를 다시 한 경우

2. 동의를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3. 해당 행위의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공정한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이용자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이용자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
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
(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
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
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등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
거나 이용자 또는 다른 사업
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
고 인정될 것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
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
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
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
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53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신 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이용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를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5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

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은 그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를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2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신청인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를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같은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1. 신청인이 동의를결의 신청을

<신 설>

취소한 때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
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때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동
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한 때

4. 동의의결의 이행이 모두 완
료된 때

5. 동의의결이 취소된 때

⑦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서
면의 신청 방법, 의견 제출 방
법, 이행계획의 점검 방법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
상황 등 사실관계가 현저히
변경되어 시정방안이 적정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

<신 설>

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53조의5(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
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
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
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53
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